

# 사증 발급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첫 단계

## 사증(visa) 발급 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권혁기 이사 TAX Global Employer Services(GES) 소득세/국제조세 세무자문

### 외국인 체류 현황 및 사증 발급에 대한 사전검토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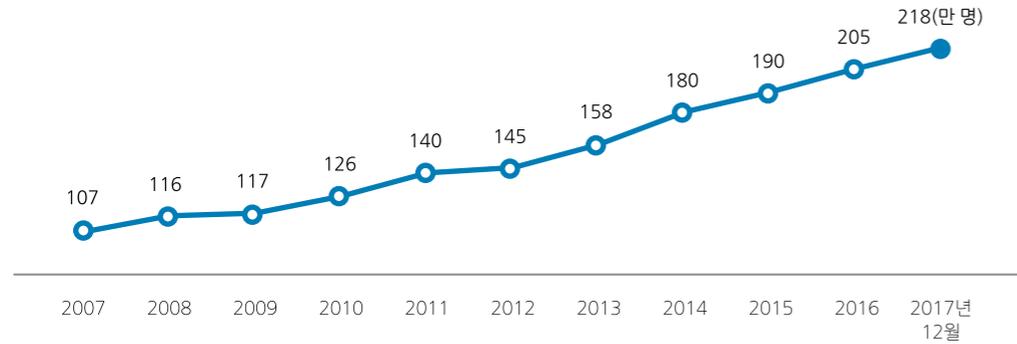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18만 명으로 2016년 대비 6.4%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8.5%를 기록했다. 또한 법무부의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 발급요건 완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 확대, 각종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 및 우수 인력 유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늘어나는 외국인 모두에게는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visa) 발급이 요구된다. 한국의 사증은

외국인의 활동 범위에 따라 체류자격을 3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다양한 사증 유형별로 발급 절차뿐만 아니라 제출서류도 상이하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그 유형별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발급을 진행하다 일정이 지연되어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입국 목적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사증으로 입국을 할 경우, 법무부에서 사증을 지원해주는 기업 혹은 해당 외국인에게 추후 벌금을 물리거나 사증 신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외국인을 강제추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시 적절한 사증 발급을 위해 입국 목적, 체류 기간,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증 발급 절차의 첫 단계다.



그림 1.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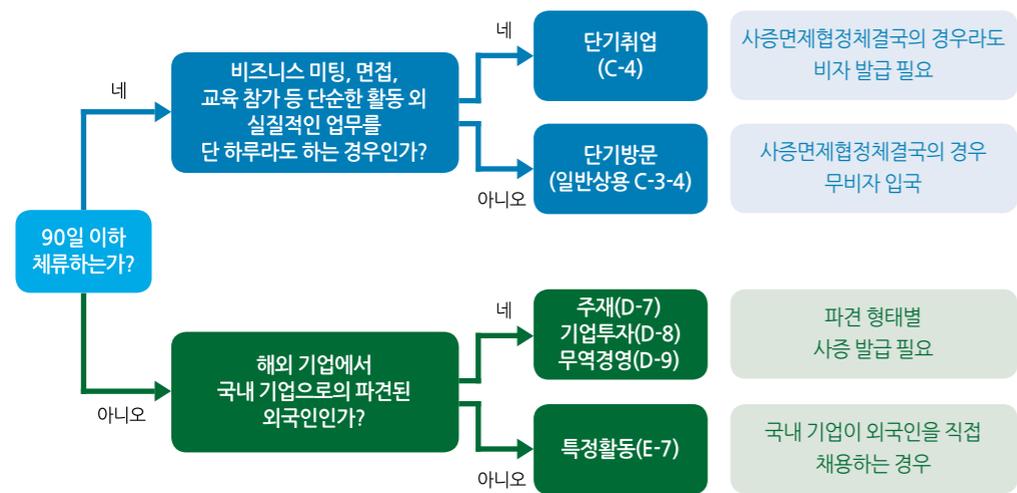
출처: 법무부,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올바른 사증 유형 - 외국인 초청

36가지 사증 유형 중, 국내 기업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기 위해 주로 많이 신청하는 사증 유형과 대상자 요건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2018.7.1. 기준 107개국, 일반여권 69개국)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영리 행위나 취업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해야 한다. 최근

그림 2. 사증 유형과 대상자 요건에 따른 주요 사증 분류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표 1. 개인 자격으로 취득이 가능한 장기비자 및 동반비자

| 장기비자      |  |
|-----------|--|
| 재외동포(F-4)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현재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취득 가능한 비자 |
| 영주(F-5)   | 대한민국 영주권                                       |
| 결혼이민(F-6)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배우자                        |
| 동반비자      |  |
| 동반(F-3)   | D/E 타입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 가능한 동반비자       |
| 방문동거(F-1) | F4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취득 가능한 동반비자           |

출처: 딜로이트 애널리시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지침은 2017년 3월부터는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단기취업·파견 비자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해도 90일 이하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비즈니스 미팅, 면접, 교육 참가 등 단순한 활동 외 실질적인 업무를 단 하루라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기취업·파견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외국인 초청 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재외동포를 위한 개인 자격으로 비자를 취득해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장기비자와 초청자의 동반자로서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동반비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 고용 및 파견 관련 사증 발급 제한 사항

국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해외 기업에서 국내 기업으로 외국인을 파견하는 경우, 사증 발급 허가는 외국인 개인의 자격과 사증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기업의 자격 검토 후에 이뤄지며, 사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자격 요건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증

신청을 하기 전에 사증 유형에 따른 자격과 제한사항을 정확하게 알아본 뒤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례 1) 내국인 고용인원 수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수 제한

국내 기업 A는 최근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관련 사증 발급 신청을 준비 중이다. 출입국사무소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콜센터에 문의해 필요서류를 준비했다.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서류를 제출했지만, 사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외국인 채용에 앞서 충족시켜야 하는 내국인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외국인의 국내 고용을 위한 사증은 내국인의 고용만으로 필수 전문 인력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 주어지는 비자이므로,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을 좀 더 찾아서 고용하고, 그런 후에도 외국인 고용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초청하라는 설명이었다. A사는 출입국사무소의 편람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콜센터로부터 A사가 신청한 고용 관련 사증의 직종코드에는 내국인 고용인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안내 받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출입국사무소장의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 답했다. 결국 A사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만 소비했으며, 당장 다른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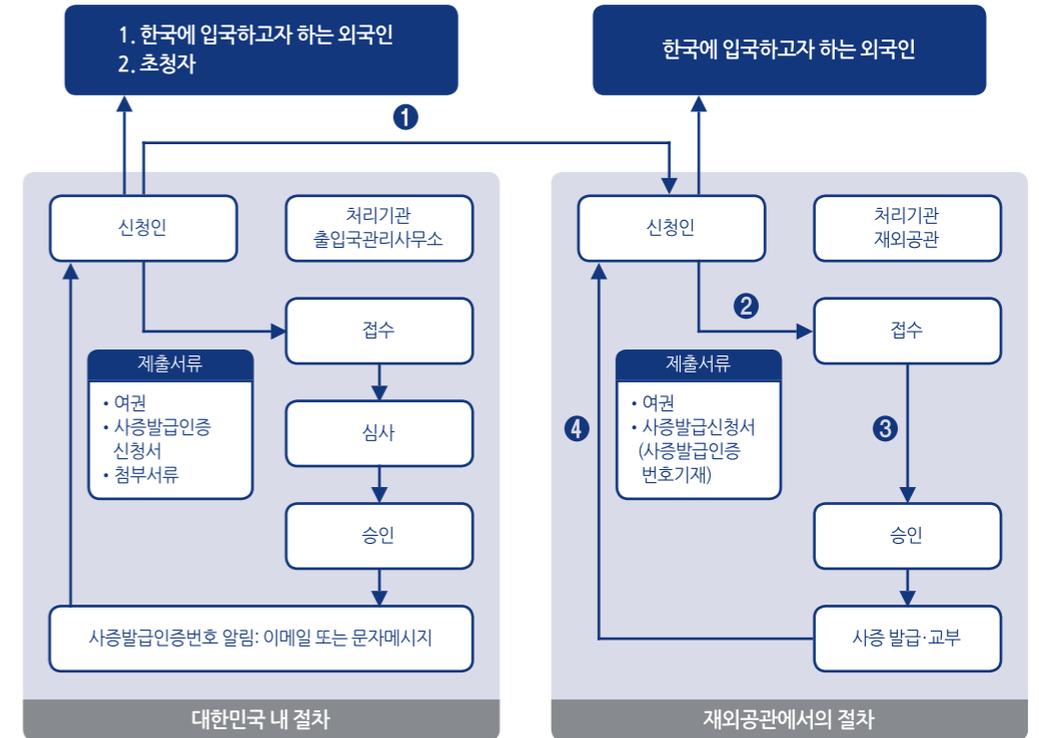
**사례 2) 투자금액 대비 외국인 초청인원 수 제한**

국내 투자기업 B는 최근 해외에서 파견 오는 외국인을 초청하려 했다. 몇 번 초청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크게 부담 없이 사증 발급 신청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증 발급 신청을 하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했더니, 이번엔 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규정이 강화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 대비 할당된 외국인인 모두 초청했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투자금액을 늘리지 않는 한 더 이상 초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편람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어 B사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인 초청 시 사증 유형마다 각기 다른 제한이 있고, 이러한 규정들은 잘 공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출입국사무소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충분히 알아본 후 신청을 해야 회사나 해당 외국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그림 3. 사증 발급 절차 개념도



출처: 금융중심지지원센터 Korean Visa & Immigration Guide

**사증 발급 절차 - 재외공관에서의 절차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장기파견 비자 및 국내 채용 비자 등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한국 회사)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한 사전심사 후 사증발급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때 사증 발급 신청은 외국인이 근무 예정인 회사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해야 한다. 사증발급인증번호가 부여되면 외국인인 재외공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스탬프의 발급은 별도의 심사가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접수 후 처리 소요시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소요되는 시간은 재외공관마다 다를 수 있다.

단기체류를 위한 사증과 같이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 발급을 신청해 발급 받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외국인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마다 절차와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방문할 재외공관에 확인해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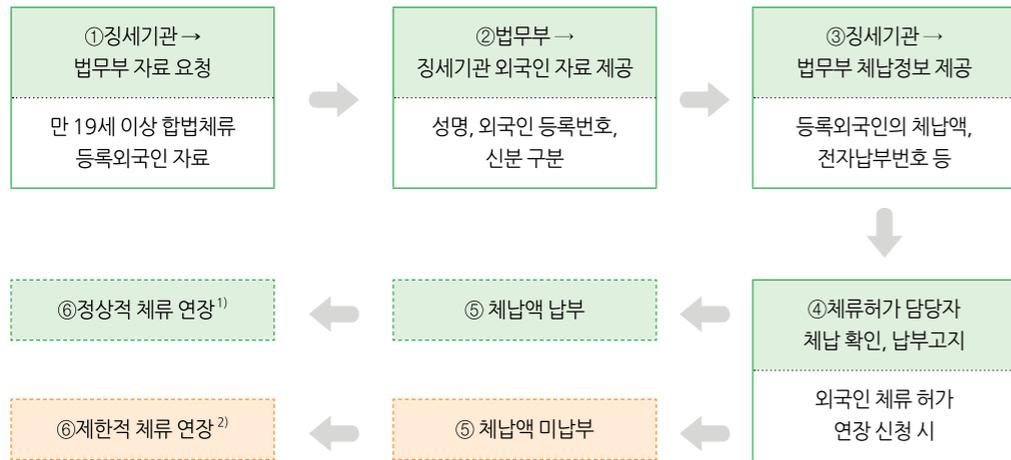
예를 들어, 인도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관할 지역별로 3곳이 있는데, 모두 다 대한민국 사증 신청을 받지만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뭄바이와 첸나이 공관에서는 직접 신청을 받지만, 뉴델리의 경우 공관이 아닌 별도의 한국비자센터에서 사증 신청 및 발급을 처리한다. 같은 사증을 신청하더라도 공관마다 심사하는 영사의 재량에 따라 필요서류가 가감되고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곳에서 정확한 제출서류 안내를 받아야만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사증 연장 시 세금 납부 확인 필요**

국내에서 고용 활동을 통해 근로를 수행한 외국인들도 국내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세무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주체는 해당 근로소득의 지급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국내 기업 혹은 외국인 개인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소득을 외국인 개인을 대신해 신고하면 사증 연장 시 별 무리 없이 세무신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 외국인 개인이 해당 근로소득을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기한에 맞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증 연장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고납부의무를 기한 내에 다하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어 사증 연장을 위해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더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 관련 가산세까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사증 발급과 더불어 세무신고의무도 사전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업무개념도**



1) 정상적 체류 연장: 체류자격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2) 제한적 체류 연장: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8.4.24.

참고로, 법무부는 외국인 사증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관계부처 간 체납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sup>1</sup>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을 하고, 미납부 시에는 제한적 체류 연장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꼼꼼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증 발급 절차시 마주하게 되는 흔한 고민 해결**

다양한 사증 유형, 복잡한 자격요건 등과 같이 사증 발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여러 이슈 외에도 아래와 같이 마주하게 되는 고민거리들이 적지 않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장 오는 외국인이 있는데, 비자가 필요할까?
- 비자 유형이 너무 많아 복잡한데 자격요건에 맞는 비자 유형이 정확히 무엇인가?
-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 출입국 심사 중 출입국이 가능한가?
- 외국인 임직원의 동반가족도 함께 초청할 수 있나? 혹시 외국인 도우미도 초청할 수 있나?
- 입국 만료일과 비자 만료일은 서로 다른 건가?
- 외국인 등록증은 꼭 만들어야 하나?
- 비자 연장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이러한 고민의 해결에는 출입국사무소 담당 조사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적합한 사증 발급을 위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정답이다.

1 출입국관리법 제78조(관계기관의 협조, 2017.3.14. 시행)



글로벌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는 시대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국가 간 인력의 이동이 필요한데, 이동 목적에 맞는 사증 발급은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첫 단계다. 외국인 체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및 우수 인력 유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 몇 해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합한 사증 발급에 대한 법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꼼꼼하게 살핀 후 사증 신청을 해 기업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Contact**  
 권혁기 이사  
 TAX Global Employer Services(GES)  
 소득세/국제조세 세무자문  
 02-6676-2840  
 hyekwon@deloitte.com